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. 11. 9 선고 2022가단340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2. 11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. 12. 15. 접수 제25173호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장원정

[별지1]

별 지 목 록

1. 경상북도 상주시
대 700m²
2. 경상북도 상주시
대 357m²
3. 경상북도 상주시
<도로명주소>
경상북도 상주시
조립식판넬조
아스팔트싱결지붕 단층
주택 98.86m²

[별지2]

청 구 원 인

1. 별지목록기제 부동산은 2002.1.9.매수하여 2002.1.11.소유권이 전등기를 필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입니다.

2. 그런데 소외 D가 피고의 투자금 50,000,000원의 담보로 원 소유의 별지기제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5.12.15. 접수 제25173호 원인 2005.12.9.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금 90,000,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게 되었습니다.

3. 그 후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 13527호로 원고와 소외 D를 피고로 한 약정금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, 이에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, 이 판결을 원인으로 별지기제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.

4. 그 이후 2020.2.17. 원고의 대리인 어머니 B와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 F 간 수원지방법 안양지원 2016가단13527호의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 75,000,000원을 지급함으로써,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으로 5,000,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.

5. 이에 원고는 2020.2.17. 원고의 오빠 G 명의로 금 75,000,000원과 5,000,000원을 피고의 대리인 변호사 F에게 스마트뱅킹 입금하였습니다.

6. 따라서 이 사건 별지기제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소멸되어 원고는 피고와 변호사 F에게 별지기제 부동산에 관

01-0000-0000



